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4-28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2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14나31193 부당이득금등
원고, 항소인	A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4. 7. 23. 선고 2014가소9139 판결
변 론 종 결	2015. 1. 23.
판 결 선 고	2015. 2. 6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0,242,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4-28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B은 2013. 7. 29. 아들인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[redacted]시 [redacted]구 C 임야 142㎡ 및 그 지상 미등기 단독주택(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원고는 같은 날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취득세 8,925,000원, 지방교육세 765,000원, 농어촌특별세 510,000원 합계 10,200,000원을 자진 신고하였다.

다. 원고가 위와 같이 자진신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, [redacted]구청장은 2013. 10. 11.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무상증여에 따른 취득세 8,962,480원, 지방교육세 768,210원, 농특세 512,140원 합계 10,242,830원(납부기한 2013. 10. 31.)을 납부고지하였고, 이에 원고는 2013. 10. 21. 위 취득세 등 합계 10,242,830원을 납부하였다.

라. 한편 원고와 B은 2013. 8. 19.자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기로 하는 증여계약해제증서를 작성하였다.

[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갑 1, 4, 5호증(원고는 갑 4, 5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조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요지

원고는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B의 사망시까지 그를 부양할 의사가 없음에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4-28

도, B에게 매월 1,000,000원씩 부양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체결된 것으로, B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,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행위로서 무효라거나, 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, 이 사건 증여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이상 원고에게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, 위와 같이 적법·유효하지 않은 계약을 근거로 한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·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, 피고를 상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 상당액인 10,242,38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.

나.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

1) 관련 법령

[지방세법]

제7조(납세의무자 등)

① 취득세는 부동산, 차량, 기계장비, 항공기, 선박, 입목, 광업권, 어업권, 골프회원권, 승마회원권,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(이하 이 장에서 "부동산 등"이라 한다)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.

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「민법」,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건설기계관리법」, 「항 공법」, 「선박법」, 「입목에 관한 법률」, 「광업법」 또는 「수산업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·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. 다만, 차량, 기계장비,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.

[지방세법 시행령](2014. 8. 12.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20조(취득의 시기 등)

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(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4-28

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)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·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·인낙조서·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
2) 관련 법리

가)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,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,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.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, 의미,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).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(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).

다. 판단

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, 앞서 본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,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그 해당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, 원고는 등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4-28

여부와 상관 없이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3. 7. 29.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고,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·인낙조서·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나,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.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거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,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, 원고 제출의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·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함종식

판사 김관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4-28

판사 진현지